

의안번호	제 75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월 일 (제296회)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0년 11월 12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안

의안 번호	75
----------	----

제출연월일 : 2010년 11월 12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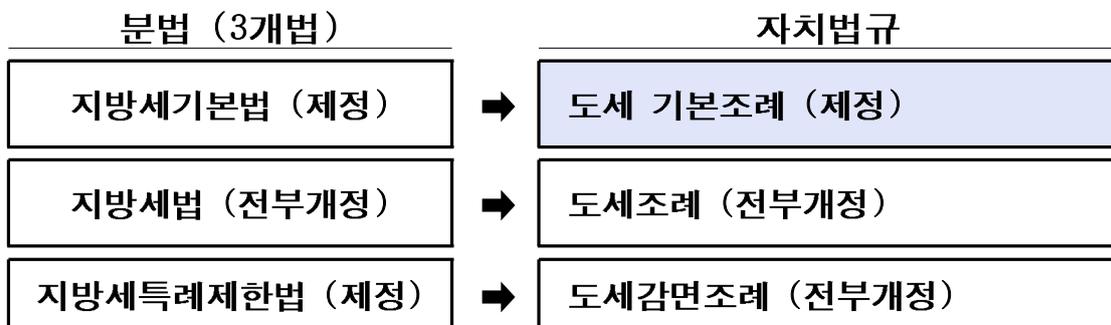
- 지방세법의 선진화 및 체계화, 납세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현행 단일법인 「지방세법」을 3개법으로 분법하여 2011. 1. 1부터 「지방세기본법」(2010. 3. 31제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로 제정하여 도세 부과·징수 운영기준으로 삼고자 함.

※ 금번 조례제정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따름.

■ 지방세법 분법 내용



■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자치법규 구성



2. 주요내용

- 서류 송달의 방법 규정 (안 제4조)
-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시기 규정 (안 제5조)
-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도세 세액한도 규정 (안 제6조)
 - 고지서 세액이 50만원 이하의 도세는 세무공무원이 수납가능
-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규정 (안 제7조)
 - 성실납부자는 연간 3건이상, 최근 3년이상 납기내 납부자를 의미
 - 성실납부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음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충청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법 제6조에 따라 도지사는 도세의 부과·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도지사가 직접 처리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경우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도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시장·군수가 읍·면·동장 또는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도세징수교부금)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 도지사는 영 제55조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매 분기마다 그 처리비로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매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매분기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도세는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다.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성실납부자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면허분등록면허세, 균등분주민세, 소유에 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기본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려면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67조(도세 징수의 위임) ① 시장·군수는 그 시·군 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는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

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군의 부담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에 따라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군에 징수 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도세와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72조(공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공탁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공탁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55조(도세 징수의 위임 등) ① 시장·군수가 법 제6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시·군 내의 도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시·군의 부담으로 하고, 체납처분 후에 징수되는 체납처분비는 시·군의 수입으로 한다.

② 도는 시장·군수가 법 제6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

하였을 때에 납입한 도세 징수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가 징수한 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도의 금고에 납입하거나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도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에 있는 시·군은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2. 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 외에 있는 시·군은 수납한 날부터 5일 이내

④ 세무공무원이 징수한 시·군세를 시·군의 금고에 납입할 때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61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①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때에는 현금, 신용카드(제62조에 따른 납부로 한정한다)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되, 그 해당 납세고지서, 신고납부서 또는 독촉장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항에서 “금고업무대행회사등”이라 한다)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다.

1. 금고업무대행회사등이 없는 도서·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수납하는 경우